

# 예산총칙

201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62,284,072	28,868,522
일반회계	730,665,560	21,919,967
특별회계	231,618,512	6,948,555
공기업특별회계	39,062,209	1,171,86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062,209	1,171,866
기타특별회계	192,556,303	5,776,68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314,938	459,448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13,193,817	395,815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250,739	127,522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239,754	37,193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992	90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137,271,551	4,118,147
주택사업특별회계	2,248,624	67,45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89,037	29,671
기반시설특별회계	1,136,861	34,106
경영사업특별회계	353,244	10,597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279,500	8,385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12,475,957	374,279
주차장특별회계	3,799,289	113,97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0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2,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144,15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한다.

1. 총액인건비
2. 지방채상환 원리금

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한다.